

#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연번	의안 번호	구 분	발의자 및 제출자	발의 및 제출일	회부일
1	958	의원발의안	박성연의원 외 13명	2023년 6월 19일	2023년 8월 21일
2	1153	시장제출안	서울특별시시장	2023년 8월 14일	2023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 가. 박성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958)

###### 1) 제안이유

-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에 입소하는 경우 과도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예비군의 훈련 참여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예비군훈련장 관리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고 그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그 차량 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 나) 기타
  - (1) 입법예고(2023. 8. 24. ~ 8. 28.)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나.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의안번호 1153)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 가)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을 위한 목적 (안 제1조)
  - 서울시민 예비군 대상 서울 외곽에 위치한 4개 예비군 훈련대 입소 편의 제공으로 예비군 처우개선 강화
- 나) 예비군 수송버스 정책 대상 등 용어 정의 (안 제2조)
  - 예비군 훈련장이란 서초·박달·노고산·금곡훈련대를 지칭함.
  - 예비군이란 서울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예비군을 의미함.

- 수송버스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함.

다) 수송버스 운행 비용 관련 지원 규정 마련 (안 제3조)

-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방법, 정산 등 규정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2. 7. 13. ~ 8. 2.)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3.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 취지 검토

- 본 제정조례안 2건은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대원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예비군훈련장에 응소하는 경우, 그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송 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의원안 비용추계: 훈련대상 연인원: 208,960명, 2024년 추계액: 23억 6천 7백만원

시장안 비용추계: 훈련대상 연인원: 208,960명, 2024년 추계액: 23억 9천 4백만원

-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예비군 육성·지원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32조)에서는 예비군의 사기 양양 등 예비군의 육성·사항을,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별표)에서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병무청 훈령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제2조의2)에서는 예비군, 지역예비군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 제 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재정 및 직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1. ~ 4. (생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조(목적)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8.>

1. ~ 3. (생략)
4.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
5. (생략)

6. "지역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7. ("직장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8. (이하 생략)

**< 예비군 훈련 운영 개요 >**

구 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동원미참석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7~8년차		미이수 훈련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2박3일		
	7년차 ~ 연령 정년		미이수 훈련			

- 본 제정조례안 2건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대원의 사기양양과 이동권 지원을 목적으로 예비군훈련장 응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상정된 2건의 의안은 지역예비군대원의 예비군훈련장 응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나 형식면에서 서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일부 규정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
  - 본 2건의 각 조례안에서는 예비군훈련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예비군법 시행령」(제27조(실비변상 등))에서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를 변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각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교통비를 이 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윤후덕의원 대표발의(2013.1.3.))에서는 실비 외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실제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위원회 계류 중임.

<p>「예비군법」</p> <p>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p> <p>「예비군법 시행령」</p> <p>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

< 예비군 훈련 관련 정부 실비 지급액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0 ~ '11	'12 ~ '13	'14	'15 ~ '16	'17 ~ '19	'20 ~ '22	'23
식 비	5,000	6,000	6,000	6,000	6,000	7,000	8,000
교통비	4,000	4,000	5,000	6,000	7,000	8,000	8,000
계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5,000	16,000

○ 또한, 본 조례안들과 같은 취지로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 예비군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송버스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미 마련되었거나 입법 진행 중에 있음.

※ 제정 완료 5개 자치구(양천,강남,서대문,광진,동대문), 제정 중(의원발의) 11개 자치구, 집행부 제정 진행 중 1개 자치구(영등포구), 계획 없음 9개 자치구(붙임)

- 다만, 자치구 지역예비군은 동시에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 정산 등에 있어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보조금 부담 방법에 대한 해당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대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 보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없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비상기획관의 입법 절차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재원분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 나. 세부내용 검토

### 1) 제명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 본 2건의 조례안 각 제명 안을 보면, 박성연의원안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으로, 시장안은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진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참조).
- 먼저, 박성연의원안 제명을 보면, 예비군훈련 응소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동권 보장’은 다소 포괄적 개념으로 보일 여지는 없는지, 현재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고 있다고 곡해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시장안 제명은 서울특별시 예비군의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대한 운송비만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조례안 제명 >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따라서, 향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박성연 의원안으로 하거나, 수송버스 지원에 한정하는 시장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안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연계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5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본 조례안과 같은 취지의 조례를 제정(예정)한 곳은 16개 자치구이며, 이 중 15개 구는 제명을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마포구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로 유사하게 규정(붙임 참조).

2) 목적(박성연의원안 제1조, 시장안 제1조)

- 본 조례안 2건의 각 제1조는 조례 목적규정으로, 박성연의원안은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서울특별시 예비군대원”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경비를 지원을 본 조례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시장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으로 한정하여,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안 제1조 >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예비군대원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대원의 공지와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비군법」(제14조의3)에서는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구분하면서, 관할구역 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장예비군 대원 등은 예비군훈련장으로의 응소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 지원 대상 예비군을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대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원안 제1조 관련 비상기획관 의견>

○ 제1조(목적) : 지자체장이 육성·지원 대상 예비군을 지역예비군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구분되며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에 따라 지역 예비군으로 한정해야함.</li> <li>※ (근거조항):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 지역 예비군의 육성·지원 책임이 있음</li> </ul>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3) 정의(박성연의원안 제2조, 시장안 제2조)

- 본 조례안 2건의 각 제2조에서는 조례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각 의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다른 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되거나 상이하게 규정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 >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예비군대원으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및 제56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훈련장”이란 제1호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부대장”이란 제2호에 따른 예비군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송버스”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단순히 다른 법령의 규정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해당 법령이 폐기되었음에도 관련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 상위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것은 정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 혼란이 생기고 집행하는 데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관련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재 기재하거나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정의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비상기획관은 본 의원안 조문 중 ‘예비군훈련장’에 대하여 본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서울특별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군부대인 제 52사단과 제56사단 예하 예비군훈련장\*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예비군훈련장(4개소) : 52사단(박달, 서초), 56사단(노고산, 금곡)

**<의원안 제2조 관련 비상기획관 의견>**

- 제2조(정의) : 훈련장 수송버스 정책 대상이 되는 “예비군”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서울지역 방위사단인 52, 56사단 이외 부대로 동원훈련소집을 통보받은 예비군이 포함 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 가능함에 따라 훈련장의 범위를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제52사단, 제56사단으로 한정해야 함.

- 이에 대한 근거로는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칙(제9조제1항)에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받았을 때 지원사업을 결정한다(제9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

- 따라서 서울특별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예비군 훈련 관련 수임군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2사단과 제56사단으로써, 그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사업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수임군부대의 요청에 한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바,
- 소송버스 임차경비 지원 대상 예비군훈련장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입법 체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용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제9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 4) 비용의 지원 등(박성연의원안 제3조, 시장안 제3조)

- 본 조례안 2건의 각 제3조제1항에서는 수송버스 등 차량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 박성연의원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고자 예비군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장이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시장안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조례안 제3조 >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고자 하는 부대장이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수송버스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따라서, “차량” 또는 “수송버스”의 정의를 통한 운행 범위의 별도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보조금 지원 요청 주체를 “예비군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장”으로 할 것인지, 또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지역예비군의 훈련 관련 수임군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로서, 예하 제52사단과 제56사단에서 개별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비상기획관은 별개 사업으로 운영 중인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경로에 대하여,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조금 지원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의 이를 지원하여, 예하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 본 조례안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주체를 책임 군부대의 장(수도방위사령관)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본 조례안 각 제3조제2항은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대하여, 박성연의원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장안은 이에 더하여 예비군 육성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까지 본 조례안 운영의 근거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 비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의원안 제3조제2항 관련 비상기획관 의견>**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명시 필요
  - 예비군 육성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본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의 내실화에 기여.

## 5) 부칙

- 각 조례안 부칙에서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규정 없이 조례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의 확보 또는 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시행일을 내년부터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부 칙(안)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서울특별시 예비군 이동권 보장 조례안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 붙임 1 예비군훈련 수송 비용 지원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2023년 8월 18일 기준>

※ 제정 완료 5개 자치구(양천, 강남, 서대문, 광진, 동대문), 제정 중(의원발의) 11개 자치구, 집행기관 제정 진행 중 1개 자치구(영등포구), 계획 없음 9개 자치구

※ 범례: 제정완료-○ / 제정 진행 중 - △ / 미 제정 - ×

연번	자치구명	제정여부	내 용	조례명
1	종로구	×	-	-
2	중구	△	의원발의 예정,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9월중 공포)
3	용산구	×	-	-
4	성동구	△	의원발의 예정,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9월중 공포)
5	광진구	○	의원발의 예정, 금년도 시행(추경예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28./조례 제1370호)
6	동대문구	○	의원발의,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0./조례 제1571호)
7	중랑구	△	의원발의,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9월 공포)
8	성북구	×	-	-
9	강북구	×	-	-
10	도봉구	×	-	-
11	노원구	×	-	-
12	은평구	△	의원발의 예정,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10월 공포예정)

연번	자치구명	제정여부	내 용	조례명
13	서대문구	○	의원발의 예정,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2./조례 제1607호)
14	마포구	△	의원발의 예정,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9월 공포예정)
15	양천구	○	기시행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2023.3.9./조례 제1720호)
16	강서구	△	2023.9월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9월 중 공포)
17	구로구	×	-	
18	금천구	×	-	
19	영등포구	△	집행기관 조례 제정 예정(연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9월 중 공포)
20	동작구	△	7월 의원발의	
21	관악구	×	-	
22	서초구	△	9월 의원발의 예정	
23	강남구	○	조례제정 완료, 추경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7./조례 제1825호)
24	송파구	△	의원발의 예정,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9월 중 공포)
25	강동구	△	의원발의 예정, 2023년 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9월 중 공포)

## 붙임 2 예비군 운송 지원 관련 조례명, 타 지방자치단체 제정 사례

연번	자치단체명	조례 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개정 구분
1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제1588호	2018. 1. 9.	일부 개정
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53호	2023. 8. 2.	제정
3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35호	2018. 5. 3.	일부 개정
4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64호	2023. 8. 11.	제정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72호	2023. 6. 30.	제정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	제6086호	2023. 8. 11.	제정
7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71호	2023. 7. 31.	제정
8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32호	2023. 8. 10.	제정
9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82호	2023. 8. 3.	제정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66호	2023. 8. 10.	제정
11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44호	2023. 7. 6.	제정
17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에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73호	2023. 8. 9.	제정
18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08호	2023. 7. 31.	제정
19	울산광역시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16호	2023. 7. 21.	제정
20	경기도이천시	이천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73호	2023. 8. 14.	제정
21	경상남도진주시	진주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87호	2023. 8. 7.	제정
22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에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01호	2023. 8. 1.	제정
23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02호	2023. 8. 10.	제정
24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에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88호	2023. 8. 2.	제정
25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에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13호	2023. 8. 4.	제정
26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75호	2023. 8. 14.	제정